

2025년도 제33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33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여성가족부 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강조사항

< 응시자격(필기면제) 서류 제출 기간 > 2025. 9. 24.(수) ~ 10. 14.(화) [10일간]

* 제1차(필기) 및 제2차(면접)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원서접수 기간은 4쪽 [3. 시험 일정] 참조

모든 수험자(응시자격 서류 기제출자 제외)는 반드시 위 기간에 응시자격(필기면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필기시험 면제대상자는 서류심사 기간에 면제서류(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시 면접시험에 접수·응시할 수 없음

* 서류제출기간 착오 등으로 서류를 미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귀책사유이며 면접시험 접수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며, 추후 응시할 방법도 존재하지 않으니 반드시 면접시험 접수 전 필기면제 서류심사 통과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방법 12쪽 참조

*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응시 급수가 다를 경우 금년도 응시자격·면제 서류 제출 기한 내 해당 급수로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개 이상의 급수에 동시에 응시할 경우 반드시 신청서상의 해당 항목에 체크해야 합니다.(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2.응시분야')

1. 주요 안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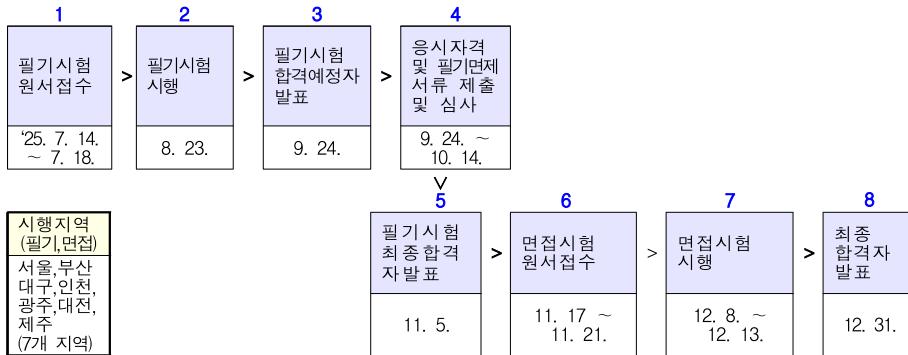
- 모든 수험자의 응시자격(면제) 서류 제출기한 통일
 -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의 유형에 따라 서류 제출기한이 상이했으나(~22년까지), 모든 수험자는 통일된 서류제출 기한('25.9.24~10.14)내 응시자격(면제) 서류를 제출 완료해야 함('23년 이후 적용 중)
 - 졸업예정자도 통일된 서류제출 기한('25.9.24~10.14)내 졸업예정증명서와 전공과목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모든 수험자는 서류 승인 후 면접시험 접수 가능**
- 필기시험 면제 신청자는 서류제출 전 반드시 큐넷 회원가입을 하여야 함
 -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면제자 등록이 불가하며, 이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수험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필기시험 면제자 유형 예시
[2급 청소년지도사] : 2025. 9. 24. ~ 10. 14. 필기면제 증빙서류 제출
1. 대학졸업(예정자) + (졸업한 대학교에서)전공과목 이수
2. 대학졸업(예정자) + 학점은행제/타대학/대학원 전공과목이수
3. 전문대졸업 + 대학교 편입 후 졸업(예정자)
* 위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류제출 마감일('25.10.14.)기준으로 과목이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다음 회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3급 청소년지도사] : 2025. 9. 24. ~ 10. 14. 필기면제 증빙서류 제출
1. 전문대졸업(예정자) + (졸업한 전문대학교에서)전공과목 이수
2. 전문대졸업(예정자) + 학점은행제/타전문대/대학교 과목이수
* 위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류제출 마감일('25.10.14.)기준으로 과목이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다음 회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필기시험 빙자리 추가접수 실시
 - 접수취소자 수수료 반환 마감 후 2일간('25. 8. 14. 09:00 ~ 8. 15. 18:00) 취소자로 발생한 시험장의 수용인원(빙자리) 범위 내에서 추가 원서접수
* 빙자리 추가접수 기간 중에는 취소가 불가함
 -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 무효 처리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변경사항 안내(27. 1. 1. 시행)
○ 청소년지도사 1급 필기시험에 주관식 폐지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 폐지
○ 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 및 면접시험 폐지 → 서류심사로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급 취득에 필요한 검정과목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추가(총 9개 과목* 이수 필수)하고, 검정과목당 이수학점은 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이상으로 함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 이상)- (전문)학사 학위 취득 + 2급 취득에 필요한 시험과목을 모두 이수(전공여부 무관) 후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성적표 등) 제출 및 승인 완료 시 2급 합격자로 결정-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사경력 2년 이상 이거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2급 응시자격 기준을 충족
* 이외 세부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참조

3. 시험 일정



※ 원서접수는 접수 첫 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 전부면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원서접수(위의 표1 기간)를 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 과목이수자, 경력자는 위의 표4 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면접시험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요건을 갖추어도 면접시험 응시 불가능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면접시험 원서접수 시 선택순에 따라 수험자가 직접 선택

4. 시행 및 서류심사기관

○ 공단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본부, 인천·제주지사 (7개 기관)

※ 고객센터 : 1644-8000(일반적인 사항 안내)

기관 및 부서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02-2137-0542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46519	051-330-1822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053-580-2382
인천지사 필기시험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21634	032-820-8692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61008	062-970-1799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25번길 1	35000	042-580-9140
제주지사 자격시험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	63220	064-729-0713

※ (응시자격) 본인이 1차 시험을 응시한 시험장 관할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1차면제) 위 표에 있는 기관 중 가까운 지부·지사로 제출하여야 함

5. 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

가. 시험과목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구 분	시험과목 및 시간			
	교시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1급 (5과목)	1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연구방법론 ○ 청소년 인권과 참여 ○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기관 운영 ○ 청소년지도자론 	09:00까지	09:30~11:10 (100분)
2급 (8과목)	1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육성제도론 ○ 청소년지도 방법론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문화 	09:00까지	09:30~10:50 (80분)
	2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 ○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청소년 문제와 보호 ○ 청소년복지 	11:10까지	11:20~12:40 (80분)
3급 (7과목)	1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육성제도론 ○ 청소년지도 방법론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문화 	09:00까지	09:30~10:50 (80분)
	2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 ○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청소년 문제와 보호 	11:10까지	11:20~12:20 (60분)

※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필기시험 시행일(2025. 8. 23.) 기준임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나. 시험방법

구 분	시험방법		
	필기시험	면접시험	
1급 (5과목)	주관식·객관식(5지택일형)	과목별20문항(객14, 주6)	
2급 (8과목)	객관식(5지택일형)	과목별20문항	
3급 (7과목)	객관식(5지택일형)	과목별20문항	1조당 15분내외

6. 웅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구 분	응 시 자격 기 준
1 급 청소년 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급 청소년 지도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 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 급 청소년 지도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격 기준 관련 참고사항 ※

-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 한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 한다.
 -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나. 결격사유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4항]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2025. 4. 29.>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일(2025. 12. 31.)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도 “무효”처리 됨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5항]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함(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자격검정 응시 자격을 정지함(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3)

7. 응시원서 접수 및 수험표 교부

가. 접수자 유형 및 접수기간

○ 접수자 유형

- 일반응시자 : 필기, 면접시험 응시
 - 필기면제자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관련 별표 1의 2급 청소년지도사 제1호 및 제3호, 3급 청소년지도사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024년도 제32회 1차 합격에 의한 필기면제자) : 면접시험만 응시
 - 2급 면접 면제자(3급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만 응시
 - 2급 전부 면제자(3급지도사 자격증 소지 + 필기시험 면제 요건 충족) :
필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전부면제자’ 유형으로 접수 (시험 미응시)

- 제1차 시험(필기) : 2025. 7. 14.(월) 09:00 ~ 7. 18.(금) 18:00 [5일간]
 - ※ 제1차 시험 빈자리 추가접수 : 2025. 8. 14.(목) 09:00 ~ 8. 15.(금) 18:00
 - 빈자리 추가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제한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시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환불(취소)이 불가함
 - ※ 필기시험 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 전부면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를 하여야 하며, 응시자격 및 면제서류 제출 시기에 필기시험 면제서류를 제출·승인 받아야 함

- 제2차 시험(면접) : 2025. 11. 17.(월) 09:00 ~ 11. 21.(금) 18:00 [5일간]
 - ※ 필기면제자는 필기시험 면제 서류를 제출하고 공단 승인 받은 후 면접시험 원서접수가 가능
 -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선착순 방식에 따라 수험자가 원하는 일시 및 장소를 선택 (접수마감 후 일정변경 불가)

나. 응시원서 접수방법

- 큐넷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여권용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300 X 4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 필기시험 면제자는 서류제출 및 전산승인(통과) 후 면접시험 접수 가능(서류 미제출자 또는 미승인자 접수 불가능, 서류 제출 기한 절대 엄수)
-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 가능
-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재 접수 및 변경 불가

다. 응시 수수료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급 수	응시유형	1차(필기)	2차(면접)	계
1급	일반응시자	40,000원	–	40,000원
	면접면제자	27,000원	–	27,000원
	전부면제자	25,000원	–	25,000원
	필기면제자	–	40,000원	40,000원
2급	일반응시자	27,000원	15,000원	42,000원
	필기면제자	–	40,000원	40,000원
	일반응시자	27,000원	15,000원	42,000원
3급	필기면제자	–	40,000원	40,000원

-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라. 수수료 환불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제19조]

○ 환불방법

- 수수료 환불은 각 자격별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 ⇨ “마이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원할 시에는 큐넷 메인 홈페이지 자료실 ⇨ 각종 서식에서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구 분	반 환 기 준
100% 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원서접수기간내 취소한 경우
60% 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신분증, 검정수수료 반환신청서, 사망확인서 제출_관련양식 큐넷 자료실 참고)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신분증, 검정수수료 반환신청서, 입원확인서 제출_관련양식 큐넷 자료실 참고)
반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해진 반환기간 종료 후 반환신청을 한 경우 • 시험에 결시한 경우 • 응시자격 부적격자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 「SMART Q-Finder」 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바.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8.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편의요구사항을 선택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험기관으로 제출해야만 시험응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 **(온라인 제출 시)** 원서접수 기간 내 [큐넷 마이페이지-원서접수내역-응시 시험 편의제공사항 수정 및 확인]에서 편의제공 증빙서류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시)**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원서접수 기간 포함)에 편의제공 증빙서류를 응시 시험장 관할 시험기관에 제출
- 척추장애인은 기본적으로 하지장애인으로 구분하므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인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인으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시각, 뇌병변, 상지지체 등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 요청 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신부는 의원급·병원급 임신사실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기입되지 않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일반 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장애인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Q-Net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공지 사항(국가전문자격시험 유형별 응시 편의 제공 사항 안내) 참조

○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 >				
장애 유형	편의 구분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	면접시험	제출서류
시각 장애	증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7배 연장	-
		문제인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 문제지 - 확대 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 지침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 1 	- 독서확대기 지침 허용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대필 - 확대 답안지 - 점자 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 상기 항목 중 택 1 	-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문제인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 문제지 - 독서확대기 지침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 1 	- 독서확대기 지침 허용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답안작성 방법	- 확대 답안지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 간격 조정)	- 휠체어 사용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①,②,③호 중 하나
뇌병변 장애	장애 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휠체어 사용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 휠체어 사용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①,②,③호 중 하나
	(1) 상지 증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지체 장애	(2) 상지 경증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2배 연장	-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3) 하지 (장애정도 구분 없음, 척추장애 포함)	시험시간	- 일반 수험자와 동일	-
		답안작성 방법	- 휠체어 사용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 휠체어 사용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①,②,③호 중 하나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좌석 간격 조정)	- 휠체어 사용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①,②,③호 중 하나

	(4) 복합장애 [상지+하지]	시험시간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①,②,③호 증 하나
		답안 작성방법 및 기타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휠체어 사용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청각 장애	장애 정도 구분 없음	기타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별도 시험실 배정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①,②,③호 증 하나
신장·심장 장폐·호흡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①,②,③호 증 하나	
시험 응시에 지침이 있고 의료 기본장 기준화 자	일시적 신체장애	편의제공 사항 전반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④호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횟수 및 시간) 없음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임신부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④,⑤호 증 하나	

※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여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제출서류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
- 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불인정, 유효기간 필요) 원본 1부.

• 의사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
2. 장애로 인한 시험응시 시 불편 사항
3.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을 참조하여 제공 받고자 하는 해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

⑤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지체장애 종증상장애① +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
⇒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3}=78분]
+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60분*0.1]=6분] = 84분

9. 응시자격(필기면제) 서류제출 및 심사

가. 서류제출 대상자

유형 1 일반응시자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 일반응시자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응시하는 사람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유형 2 면접시험 면제자(2급 필기시험 합격자 중 3급 소지자)

유형 3 필기시험 면제자

2 급 청소년지도사	<input type="checkbox"/>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3 급 청소년지도사	<input type="checkbox"/>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참조

※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필기면제자는 기 제출한 서류로 대체

○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시험(필기, 면접) 불합격 처리함

※ 서류심사 결과 상시확인 가능

- 면제 : 큐넷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면제정보보기 - 시험면제
- 응시자격 : 큐넷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응시자격 - 응시자격서류제출확인

나. 제출 기간 : '25. 9. 24.(수) 09:00 ~ 10. 14.(화) 18:00

다. 제출 방법 : 방문, 등기접수 및 온라인 학력증명서 첨부 시스템

※ 등기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18:00까지 서류심사기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온라인 학력증명서 첨부 시스템은 일부 대학(교)에 한정하며,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더라고 서류심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전산 승인을 위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함

라. 심사기관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본부, 인천, 제주지사

※ 기관별 주소는 **4. 시행 및 서류심사기관** 참고

※ 본부(울산)에서는 응시자격 서류를 심사하지 않으며, 본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않음

※ 응시자격 서류는 본인이 응시한 지역 관할 지부·지사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제 서류는 위 기관 중 가까운 지부·지사로 제출

마. 제출 서류 (자격검정 요강 참조)

공통서류 + 본인의 응시유형에 해당하는 유형별 제출서류

- * 제출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2025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요강 참조
- *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응시 급수가 다를 경우 정해진 기한 내 해당 급수로 작성 후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
- * 2개 이상의 급수에 동시에 응시할 경우 반드시 신청서 상의 해당 항목에 체크해야 함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2.응시분야')

○ 공통서류 (필수제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양식은 청소년지도사 큐넷 홈페이지-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
- * 온라인학력증명시스템으로 학력 서류 제출시에도 공통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13 -

○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응시자격 기준	제출서류	비고
1급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경력인정 증빙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p><학력서류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증명서 이수구분에 “전공”으로 표기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 * 과목명 ~론·학·연구·과정·세미나·이론 인정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학위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 전공 이수자는 ‘학점인정증명서’ 추가 제출 *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은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기입국기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에 공단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p>*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응시 급수가 다를 경우 정해진 기한 내 해당 급수로 작성 후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p>
2급	1. (필기면제) 대학졸업(예정) + 8과목 전공이수 2. '05.12.31 이전 대학졸업+ 별표1의2과목 이수 3. (필기면제) 대학원수료(예정) + 8과목 전공이수 4. '05.12.31 이전 대학원수료 + 별표1의2과목 이수 5. 대학졸업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2년 6. 전문대학 졸업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3년 7. 고등학교 졸업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8년 8.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대학원 수료(예정) 증명서 - 성적증명서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해당자)경력인정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해당자)경력인정 증빙서류 	<p><학력서류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전체이력’으로 출력하고, <u>고용보험</u> <u>피보험자격</u> <u>이력</u> <u>내역서</u> 또는 <u>국민연금</u> <u>가입자</u> <u>가입증명서(전체이력)</u>로 대체 가능 * 건강보험 등 기입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수험자 동의 시 공단에서 직접 전산 조회)으로 대체 가능(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 또는 보수교육 이수자는 이수 수료증을 제출할 시 경력으로 환산하여 인정 가능 (20시간 당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하되, 전문연수는 최대 12개월, 보수교육은 최대 1개월만 인정)
3급	1. (필기면제) 전문대학 졸업(예정) + 7과목 전공이수 2. '05.12.31 이전 전문대학 졸업 + 별표1의2과목 이수 3. 전문대학 졸업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2년 4. 고등학교 졸업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해당자)경력인정 증빙서류 	<p><학력서류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전체이력’으로 출력하고, <u>고용보험</u> <u>피보험자격</u> <u>이력</u> <u>내역서</u> 또는 <u>국민연금</u> <u>가입자</u> <u>가입증명서(전체이력)</u>로 대체 가능 * 건강보험 등 기입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수험자 동의 시 공단에서 직접 전산 조회)으로 대체 가능(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 또는 보수교육 이수자는 이수 수료증을 제출할 시 경력으로 환산하여 인정 가능 (20시간 당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하되, 전문연수는 최대 12개월, 보수교육은 최대 1개월만 인정)

○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 온라인학력증명시스템으로 학력 서류 제출 시 공통서류(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만 제출함
※ 공통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미제출시 심사 불가)
- 정해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 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해당 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무효, 0점)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단, '사본' 제출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 제출 시 봉투에 '2025년 제33회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면제) 서류 제출' 표기 요함
-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응시 급수가 다를 경우 기한 내 해당 급수로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2개 이상 급수에 동시에 응시할 경우 반드시 모든 항목에 체크해야 함(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중 2등시분야)

응시자격(필기면제) 서류심사 관련 강조사항

1. 필기시험 면제자는 필기시험 서류제출 전 반드시 큐넷 회원가입 후 필기 면제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면제 서류는 '25. 9. 24.(수) 09:00 ~ '25. 10. 14.(화) 18:00까지 제출·통과 후 면접시험에 접수할 수 있음
3. 원서접수기간에는 응시자격서류를 받지 않음
4. 서류심사 결과 확인 가능
 - 면제 : 큐넷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면제정보보기 - 시험면제
 - 응시자격 : 큐넷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응시자격 - 응시자격서류제출확인
- ※ 서류 접수량에 따라 확인까지 제출 후 2~3일 소요될 수 있음
5. 응시자격 증명을 위해 서류준비 시 반드시 청소년지도사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5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요강' 확인
6.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은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에 공단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10.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2025. 8. 23.(토) 14:00 ~ 8. 29.(금) 18:00

- 15 -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Q-Net)를 통해 공개 및 의견제시
※ 가답안과 관련한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개별 회신을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1. 합격자 결정 및 발표

가.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 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예정)자로 결정

○ 면접시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제28조 제2항]

- 면접시험위원 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 단,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과락)으로 결정

나. 합격자 발표 일정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25. 9. 24.(수) 09:00

○ 필기시험 최종 합격자(응시자격 승인자) 발표 : '25. 11. 5.(수) 09:00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안내 별행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12. 31.(수) 09:00

-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다음 연도 회차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응시자격 서류심사가 완료된 수험자(경력자 등)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송부

다. 합격자 발표 방법

○ 큐넷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idosa>) 공지

○ ARS(1666-0100) 4일간 발표(유료)

- 16 -

12. 자격연수 및 자격증 교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가. 자격연수

- 1) 주 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2) 연수대상 : 자격검정 합격자
- 3) 연수시기 : 2026년 1월부터 실시 예정(30시간 이상)
- 4) 연수접수 : (1급) 2026년 1월 20일(화) 10:00
(2급) 2026년 1월 06일(화) 10:00
(3급) 2026년 1월 13일(화) 10:00
- 5) 접수방법 : 회원가입(<https://youth.go.kr/yworker>) → 온라인 신청
- 6) 문의전화 : 041-620-7721~4(지도인력 양성부)
- 7) 연수과정 수수료 : 81,000원(숙식비 별도)
- 8) 유의사항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음(자격검정 및 연수 모두 취소됨)

나. 자격증 교부

-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함(30시간 이상)
- 2) 자격연수 대상자는 결격사유 조회 필수(청소년기본법 제21조)
※ 자격연수 참가 시, 행정정보공동이용¹⁾ 정보 열람 등의
- 3)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 수료일 기준 익월 온라인 자격증 교부(예시: 1월 수료 → 2월 발급)

1)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이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에게는 민원 편의성을 정부차원에서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전자정부의 핵심 서비스

13. 수험자 유의사항

【 제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 인정 범위:
 - (모바일 신분증 및 신분확인 서비스) 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정부 24·PASS앱, KB스타뱅킹 국민지갑, 우리WON뱅킹 원더월렛 등을 통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② 모바일 운전면허증(삼성월렛 등 민간앱에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및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모바일 공무원증 ④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모바일 큐넷 전자지갑 및 모바일 신분증앱에 발급된 것) 및 정부24, 카카오, 네이버를 통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 확인 서비스 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삼성월렛 등 민간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포함)
 - (실물 신분증)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부사관·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구)국가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등록증 ⑧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례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② NEIS 및 정부24를 통해 발급(흑백,컬러)된 재학증명서(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 스마트폰을 활용할 경우 정부24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재학증명서만 인정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별지2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및 모바일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등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시험(해당교시)종료 시까지 퇴실 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0점)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해당교시)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용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춰야 하며, 종료시간 이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0점)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및 무효(0점)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 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 등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통신,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사용을 금함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 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을]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가맹거래사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형별 기재란에 표시된 형별(A형 공통)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검정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6. (1급 응시자)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이외 사항은 주관식 답안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제2차 시험 면접 수험자 유의사항 】

-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는 **2025. 11. 5.(수)** 큐넷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idosa)에 공고합니다.
- 수험자는 일시·장소 및 입실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입실시간 이후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므로 시간 내 도착하여야 함
- 소속회사 근무복, 군복, 교복 등 제복(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으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idosa>)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 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